

●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9-37호

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위반자를 행정처분하기에 앞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통보 우편물이 송달불능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9년 5월 23일

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

1. 근거법령

-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(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), 제76조(과태료)
-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(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)
- 행정절차법 제14조(송달), 제15조(송달의 효력발생)

2. 행정처분대상 : 정*혁 등 8명

3. 게재(게시)기간 : 공고일로부터 14일간

4. 의견제출기한 : 게재(게시)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

※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면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감경 받을 수 있으며,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호 다에 해당하는 경우 또한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.

5. 의견제출장소 :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 한국방송회관 11층 방송통신사무소 이용자지원과 (☎ 02-6735-8133/ FAX 02-6735-8144 / E-mail :hsham0302@korea.kr

행정처분(예정) 대상자

번호	대상자	주민등록번호/ 법인등록번호	고지주소	법령 위반사항	과태료 금액(원)	스팸URL 전화번호	광고 내용
1	정*혁	730708 -1*****	경기도 의정부시	정보통신망법제50조 제1항, 제4항, 제6항	7,500,000	02-**-56-3814	정수기 렌탈
2	주식회사 에*미*디*어	110111 -6*****	서울시 금천구	정보통신망법제50조 제1항, 제3항, 제4항	7,500,000	1877-**-25	주식
3	김*홍	780326 -1*****	서울시 강서구	정보통신망법제50조 제1항, 제2항, 3항, 제4항	3,750,000	010-**-33-0342	부동산
4	김*철	920115 -1*****	경기도 평택시	정보통신망법제50조 제1항	7,500,000	010-**-38-9870	분양
5	김*수	730901 -1*****	경기도 의정부시	정보통신망법제50조 제1항, 제4항, 제6항	3,750,000	010-**-45-8485	정책자금
6	(주)월*옥*션	110111 -5*****	서울시 서초구	정보통신망법제50조 제1항	3,750,000	02-**-4-5211	부동산
7	주식회사 부*이*앤*지	110111 -6*****	서울시 성동구	정보통신망법제50조 제1항, 제4항	7,500,000	010-**-64-4614	인터넷 가입
8	(주)혁*산*업	110111 -0*****	서울시 관악구	정보통신망법제50조 제1항	3,750,000	070-**-49-9721	인터넷 가입